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78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서영석 · 김준혁 · 서미화
한정애 · 이해식 · 윤준병
김태년 · 소병훈 · 윤후덕
박민규 의원(10인)

제안이유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다.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를 “뇌사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라 한다) 또는 사망한 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를 “뇌사나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될 때”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관정”을 “관정 등”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신고) 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

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판정대상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뇌사추정자”를 “뇌사추정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뇌사자”를 “뇌사자 또는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판정대상자와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판정대상자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 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절 뇌사의 판정

<신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절 뇌사의 판정 등

제17조의2(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신고) 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
-----뇌사

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3. (생략)

④ (생략)

⑤ 장기구득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

판정대상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1. 뇌사추정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2. -----
----뇌사자 또는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뇌사판정대상자와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

득 전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
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
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
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
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신설>

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

-----.

⑥ -----

-----뇌

사판정대상자와 제17조의2제

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기

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

행 대상자-----.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장기기증 연명의료중

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

망시각) 장기기증 연명의료중

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

망 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

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

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